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60
----------	------

제출일자 : 2018.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안 제5조)
- 나.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사용료 감면(안 제8조)
- 라. 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9조)
- 마. 위탁관리(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4. 30. ~ 5.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이란 무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3조 각 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에 있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2. 부속시설 :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선납)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3. 군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

제6조(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연장시설을 훼손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군이 후원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 전부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14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5.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장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시 사용자에게 본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연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한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설비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기간까지 그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후 그 설비에 대하여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설비의 보관 및 처분 등의 조치에 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조치에 따라 취득한 돈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사용자가 그를 인수하여 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장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탁 관리·운영) ① 군수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공연장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연장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연장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오전 (08:00~12:00)	6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사용허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60,000원으로 함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오후 (13:00~17:00)	90,000	
야간 (18:00~22:00)	150,000	
1일	20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1회	10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조명 및 음향 사용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함 ○ 마이크 2대는 기본 사용, 추가 1대 당 5,000원
음 향	1회	80,000	
	1일	15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 「공연법」 제8조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